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204호
2026년 1월 23일
금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|
| ○ 공 고 제 157 호 |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| 자 동 차 관 리 과 | 2 |
| ○ 공 고 제 160 호 | 「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| 기 업 지 원 과 | 9 |

고 시

-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○ | 고 | 시 | 제 9 호 | 남동구 통반 구역조정 결정 고시 | 총 무 과 | 19 |
| ○ | 고 | 시 | 제 1 1 호 | 상이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도 시 재 생 과 | 24 |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157호

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

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(직권폐차)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6. 1. 22.

남 동 구 청 장

1. 공 고 명 :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01.23. ~ 2026.02.07.
3. 공고대상 : 이륜차 16대
4. 공고내용

가. 자동차소유자(점유자)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(폐차)하고,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(100~150만원)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이해관계인(저당 및 압류권자)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(대체 압류 등)를 하시기 바라며,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(직권폐차)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(☎032-453-2826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차량 내 모든 물품(비품)도 강제처리 됩니다.

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내역

연번	접수 번호	차량등록 번호	차명	수취인명	주소	발송일자	미배달 사유	방치장소 (인천광역시 남동구)	최초확인일	견인일	보관장소	비고
1	2025-00206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만경로8번길 8	2025-07-21	2025-12-02	(주)인천폐차사업소	
2	2025-00243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만수5동 942-9번지 금오빌라 옆	2025-10-20	2025-12-02	(주)인천폐차사업소	
3	2025-00246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경인로600번길 1 앞 인도	2025-07-17	2025-12-19	(주)인천폐차사업소	
4	2025-00247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석산로62번길 11 탑클래스아파트	2025-09-05	2025-12-09	(주)인천폐차사업소	
5	2025-00258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용천로5번길6 덕양홈타운 B동 주차장	2025-10-17	2025-12-30	(주)인천폐차사업소	
6	2025-00259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남동대로 920 세븐일레븐 인천간석4호점 앞 인도	2025-10-17	2025-12-30	(주)인천폐차사업소	
7	2026-00002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아암대로 1634-2	2025-10-31	2026-01-09	(주)인천폐차사업소	
8	2026-00003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만수동 991-2	2025-12-02	2026-01-09	(주)인천폐차사업소	
9	2026-00004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만수동 호구포로 888번길 40 영풍아파트 a단지	2025-10-17	2026-01-09	(주)인천폐차사업소	
10	2026-00011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만수동 호구포로 888번길 40 영풍아파트 a단지	2025-10-17	2026-01-09	(주)인천폐차사업소	

11	2025-00162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남동대로921번길 30 센트라움 1층 주차장	2025-06-26	2025-08-28	주식회사 한신페차	
12	2025-00173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만수로111번길 38 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전기차 충전소	2025-07-01	2025-08-28	주식회사 한신페차	
13	2026-00007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만수동 591-6	2025-11-20	2026-01-09	주식회사 한신페차	
14	2026-00008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구월동 1199 정락빌딩 주차장 앞	2025-10-20	2026-01-09	주식회사 한신페차	
15	2026-00009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구월4동 349-230 성광빌라 공터	2025-11-07	2026-01-09	주식회사 한신페차	
16	2026-00010	번호판 없음	이륜차	미상	미상	미발송	소유주 미상	구월4동 349-230 성광빌라 공터	2025-11-07	2026-01-09	주식회사 한신페차	

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

관 리 번 호	2025-00206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07-21 ○ 견인일 : 2025-12-02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만경로8번길 8
	2025-00243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0-20 ○ 견인일 : 2025-12-02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만수5동 942-9번지 금오빌라 옆
	2025-00246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07-17 ○ 견인일 : 2025-12-19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경인로600번길 1 앞 인도
	2025-00247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09-05 ○ 견인일 : 2025-12-09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석산로62번길 11 탑클래스아파트
	2025-00258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0-17 ○ 견인일 : 2025-12-30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용천로5번길6 덕양출타운 B동 주차장

관 리 변 화	2025-00259 	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0-17 ○ 견인일 : 2025-12-30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남동대로 920 세븐일레븐 인천간석4호점 앞 인도
	2026-00002 	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0-31 ○ 견인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아람대로 1634-2
	2026-00003 	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2-02 ○ 견인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만수동 991-2
	2026-00004 	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0-17 ○ 견인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만수동 호구포로 888번길 40 영풍아파트 a단지 지하주차장
	2026-00011 	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0-17 ○ 견인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(주)인천폐차사업소 ○ 방치장소 : 만수동 호구포로 888번길 40 영풍아파트 a단지 지하주차장

관 리 변 화	2025-00162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06-26 ○ 견인일 : 2025-08-28 ○ 보관장소 : 주식회사 한신페차 ○ 방치장소 : 남동대로921번길 30 센트라움 1층 주차장
	2025-00173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07-01 ○ 견인일 : 2025-08-28 ○ 보관장소 : 주식회사 한신페차 ○ 방치장소 : 만수로111번길 38 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전기차 충전소
	2026-00007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1-20 ○ 견인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주식회사 한신페차 ○ 방치장소 : 만수동 591-6
	2026-00008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0-20 ○ 견인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주식회사 한신페차 ○ 방치장소 : 구월동 1199 정락빌딩 주차장 앞
	2026-00009	 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유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1-07 ○ 견인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주식회사 한신페차 ○ 방치장소 : 구월4동 349-230 성광빌라 공터

관 리 변 화	2026-00010		○ 차량번호 : 등록번호판 없음 ○ 소 유 자 : 미상 ○ 최초확인일 : 2025-11-07 ○ 견 인 일 : 2026-01-09 ○ 보관장소 : 주식회사 한신페차 ○ 방치장소 : 구월4동 349-230 성광빌라 공터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160호

「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. 1. 22.

남 동 구 청 장

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현안 해결 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- 근거법령 명시를 통한 조례 목적 정비 : 안 제1조
- 위원회 기능 정비 : 안 제3조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변경 : 안 제4조, 제7조
- 위원회 위원의 임기, 하위 협의체에 관한 규정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기업지원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주 소 : (21589)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, 남동구청 기업지원과
- 연 락 처 : ☎ 453-5161, FAX) 453-5169
- 남동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namdong.go.kr/>입법예고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. 끝.

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월 일
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명시를 통한 조례 목적 정비(안 제1조)
- 위원회 기능 정비(안 제3조)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변경(안 제4조, 제7조)
 - 위원 자격, 위원회 비상설 운영 변경
-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, 하위 협의체에 관한 규정 삭제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남동구 조례 제 호

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근로자·사용자·지역주민 및 남동구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구청장, 노사 업무 관련 국장
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가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나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다. 남동구의회의 의원

라. 주민 대표 또는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마.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

바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
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
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
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
이 된다.

제7조(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) 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의결은 합
의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
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
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
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 청취)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
견을 청취하거나,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

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성실히행의무) ① 노사민정 각 주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.

제10조(회의록)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.

[참고자료]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

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고 시

남동구 고시 제 2026-9호

통·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

남동구 통·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통·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.

- 다 음 -

- 시 행 일 자 : 2026. 1. 23.부터 시행
- 통·반 구역 조정 내역 : “첨부문서 참조”

2026. 1. 23.

남 동 구 청 장

[첨부]

남동구 통·반 구역 조정 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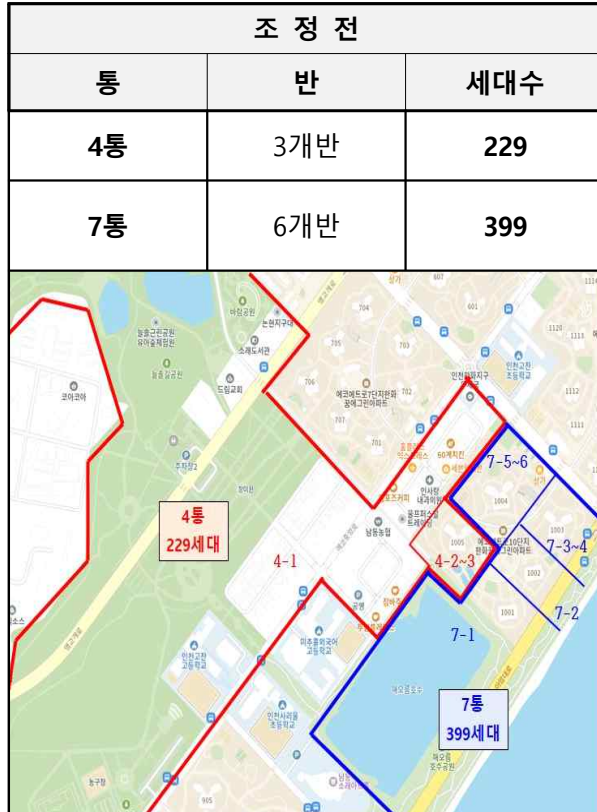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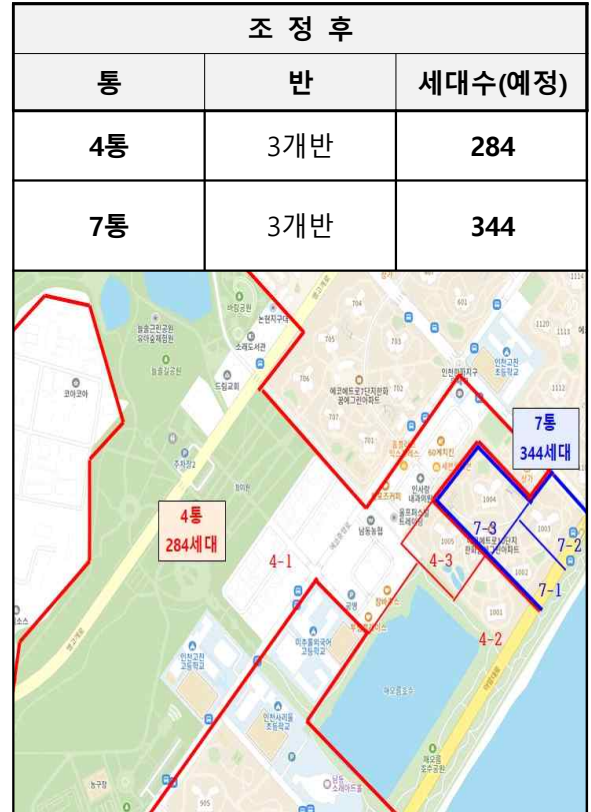
1 통 · 반 조정 내역

○ 총괄내역

구 분	조 정 전		증 감		조 정 후	
	통	반	통	반	통	반
남동구	878	3,743	-	-	878	3,743
논현고잔동	46	194	-	-	46	194

2 [논현고잔동] 통 · 반 조정 현황

○ 논현고잔동 경계조정

⇒
(경계
조정)

조 정 전				조 정 후		
통	반	세대수		통	반	세대수(예정)
45통	3개반	414	⇒ (경계 조정)	45통	5개반	198
46통	2개반	170		46통	3개반	386




○ 논현고잔동 통별 세부내역

현 행				조 정 후			
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	통	반	관 할 구 역	세대수
4	소 계		229	4	소 계		284
	1	늘솔마을, 근린생활시설 등	84		1	늘솔마을, 에코10단지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 등	84
	2	에코 1005동 1~20층	77		2	에코 1001동	55
	3	에코 1005동 21~40층	68		3	에코 1005동	145
7	소 계		399	7	소 계		344
	1	에코 1001동	55		1	에코 1002동	59
	2	에코 1002동	59		2	에코 1003동	139
	3	에코 1003동 1~19층	69		3	에코 1004동	146
	4	에코 1003동 20~38층	70				
	5	1004동 1~20층 근린생활시설 등	79				
	6	1004동 21~40층	67				

현행				조정후			
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	통	반	관할구역	세대수
45	소계		414	45	소계		198
	1	유승한내들 101동	115		1	하늘지움 101동	71
	2	유승한내들 102동	115		2	하늘지움 102동	43
					3	하늘지움 103동	70
					4	에코파크아리스타 101동	10
3	하늘지움 101~103동	184	5		에코파크아리스타 102동	4	
46	소계		170	46	소계		386
	1	유승한내들 103동	156		1	유승한내들 101동	115
	2	에코파크아리스타101~102동	14		2	유승한내들 102동	115
					3	유승한내들 103동	156

※ 2026년 하반기(미정) 45통 에코파크아리스타 171세대 입주 예정

통·반구역조정현황

▷ 승인 일자 : 2026. 01. 23.

W W	현행		증감		조정후		비 고
	통	반	통	반	통	반	
계	878	3,743	0	0	878	3,743	
구월1동	51	200	0	0	51	200	
구월2동	48	206	0	0	48	206	
구월3동	62	220	0	0	62	220	
구월4동	36	171	0	0	36	171	
간석1동	35	149	0	0	36	149	
간석2동	35	153	0	0	35	153	
간석3동	54	217	0	0	54	217	
간석4동	46	215	0	0	46	215	
만수1동	42	176	0	0	41	176	
만수2동	42	157	0	0	42	157	
만수3동	39	132	0	0	39	132	
만수4동	42	211	0	0	42	211	
만수5동	33	185	0	0	33	185	
만수6동	41	185	0	0	41	185	
장수서창동	32	121	0	0	32	121	
서창2동	53	183	0	0	53	183	
남촌도림동	44	193	0	0	44	193	
논현1동	48	254	0	0	48	254	
논현2동	49	221	0	0	49	221	
논현고잔동	46	194	0	0	46	194	

고 시

남동구 고시 제2026-11호

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
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남동구 고시 제2021-157호(2021. 9. 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남동구 간석동 311-1번지 일원 “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. 23.

남 동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재개발사업

나. 명 칭: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-1번지 일원

나. 면 적: 137,852.1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: 이기화)

나. 주 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23, 403호(간석동)(☎032-421-4631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21년 9월 15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(단위: m²)

구분	계	공동주택 용지	정비기반시설						그 밖의 용도		
			도로	주차장	공원	공공 공지	공공문화 사회복지 시설	사회복지 시설	유치원	근린 생활 시설	종교 (존치)
기정	137,852.1	88,880.7	9,971.2	3,014.6	31,549.6	1,004.4	1,505.7	-	1,185.5	348.4	392.0
변경	137,852.1	89,594.4	9,993.9	3,463.7	32,554.0	-	-	1,505.7	-	348.4	392.0

2) 건축계획(변경)

용도	대지면적(m ²)	동수	층수	세대수	건축 연면적(m ²)	비고
주택	소계	88,853.6489	24		2,568	388,151.1732
	분양	85,974.7359	22	18~35	2,438	375,926.7272
	임대	2,878.9130	2	22~25	130	12,224.4460
상가	740.7511	2	1~3		2,003.2490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공급대상	구분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상가 면적 (m ²)	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(m ²)		
		계	39형	49형	59A형	59B형	74A형	74B형	84A형	84B형		유치원	근린 생활 시설	종교 (존치)
계	기정	2,568	130	49	928	360	311	244	514	32	2,040.8970	1,185.5	348.4	392.0
	변경	2,568	130	49	928	360	311	244	514	32	2,003.2490	-	348.4	392.0
토지등 소유자	기정	1,710	-	5	613	-	309	242	512	29	190.6964	-	348.4	392.0
	변경	1,688	-	3	539	49	311	242	513	31	189.3059	-	348.4	392.0
보류시설	기정	15	-	-	3	3	2	2	2	3	-	-	-	-
	변경	15	-	-	6	5	-	2	1	1	-	-	-	-
일반분양	기정	713	-	44	312	357	-	-	-	-	1,850.2006	1,185.5	-	-
	변경	735	-	46	383	306	-	-	-	-	1,813.9431	-	-	-
임대	기정	130	130	-	-	-	-	-	-	-	-	-	-	-
	변경	130	130	-	-	-	-	-	-	-	-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)

구 분	신설(무상귀속)					폐지 (무상양여: 25,969.5)	
	계	도로	주차장	공원	사회복지시설	계	도로 등
규모(m ²)	47,517.3	9,993.9	3,463.7	32,554.0	1,505.7	26,801.8	26,801.8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(변경없음)

6. 기타 관계도서: 생략(남동구청 도시재생과 ☎032-453-8392 문의)